

#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



#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상별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 2015. 01. 19.

개정 2020. 11. 19.

개정 2022. 12. 13.

개정 2026. 01. 23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설치근거 및 명칭)** 본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(이하‘장애인체육회’라 한다.) 규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하는 각종위원회로 상별위원회(이하“본 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한다. <개정 2022. 12. 13.>

**제2조(목적)**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47조에 의하여 장애인체육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함으로써 건전한 체육풍토를 조성함에 있다. <개정 2022. 12. 13.>

**제3조(적용범위)** 본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산하지회 , 가맹단체, 심판, 지도자, 등급분류사, 장애인체육동호회와 그 단체의 산하 관련 모든 조직의 임원, 선수에게 적용한다. <개정 2020. 11. 19.>

**제4조(직능)**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.

1. 표창에 관한 사항
2. 징계에 관한 사항
3. 장애인체육상 추천에 관한 사항
4. 정부, 세종특별자치시, 기타 유관기관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

**제5조(위원회 구성)**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인
2. 부위원장 1인
3. 위원 9인 이내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

②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, 장애인체육회 관련사업 팀장으로 한다.

**제6조(위원의 위촉)** ① 위원장은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② 위원은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며, 위원중에는 법률전문가 1인을 포함해야 한다. <개정 2020. 11. 19.>

**제7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8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장애인체육회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<개정 2026. 01. 23.>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9조(위원의 해촉)** ①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.

1.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

2. 위원이 질병, 해외출장,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3.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② ‘장애인체육회’ 이사 중에서 위촉된 위원이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직도 자동으로 해촉 된다.

**제10조(회의소집 및 정족수)** 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1조(긴급업무 처리)**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차기 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## 제2장 표창

**제12조(종류)** 장애인체육회의 표창종류는 정부포상과 자체표창으로 구분한다.

**제13조(절차)** ① 표창은 산하지회장, 가맹단체장, 장애인체육회가 인정하는 단체장의 추천에

의하여 심의 결정한다.

② 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접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③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의 결정할 수 있다.

**제14조(표창시기)** ① 표창의 시기는 정기표창과 임시표창으로 나눈다.

② 정기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
1. 장애인체육회 창립기념일
2.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상 시상식
3. 기타 정부가 정하는 시상일

③ 임시표창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.

1.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.
2. 국내외 각종 대회, 행사 등에서 특별히 공적이 있는 자

**제15조(구비서류)** 표창을 추천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별지 서식에 따른 추천자 명단과 공적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제3장 징 계

**제16조(상별위원회의 설치 의무)** 징계업무를 관장처리하기 위하여 가맹단체 및 산하 지회는 본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단체의 실정에 맞게 상별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증거우선의 원칙)** 위원회는 징계를 할 경우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그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징계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징계종류)** ① 징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1. 중징계는 자격정지, 출전정지 또는 제명으로 한다.
2. 경징계는 경고 및 근신으로 한다.

②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하여는 대회 중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조항에 따라 징계한다.

③ 기타 징계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별도의 제재를 할 수 있다.

**제19조(징계대상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.

1. 비위사실이 있다고 신고 되거나 이첩된 경우
2. 위원회가 비위사실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

할 경우

3. 각종 대회 중 발생한 경기장 질서문란 행위
4. 가맹단체, 산하지회 등으로부터 징계요구를 이송 받은 경우

**제20조(출석요구)** ① 위원회가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·확인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.

③ 징계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 기타 제반자료에 따라 징계심사를 할 수 있다.

④ 징계대상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**제21조(심문과 진술권)** ①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행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징계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

③ 징계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제24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구한 경우, 징계대상자는 반드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하여 심문에 응해야 하며,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는 재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.

**제22조(징계의 양정)**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비위의 유형,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, 인품, 공적, 개선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징계의 통보)** ① 위원회가 징계를 심사하였을 경우 즉시 이를 문서로서 징계대상자 및 그 소속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징계통보서에는 징계이유와 내용은 물론 징계재심사 및 이의신청 기한과 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24조(재심청구)** ①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사 요구의 취지 및 이유와 입증방법

등을 명시하여 징계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재심사 요구를 받은 위원회는 재심사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규정의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.

③ 본 위원회는 재심결과를 심의 결정하며 본인 및 소속단체와 징계단체에 통고한다.

④ 재심청구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은 최종결정이며, 그 효력은 결정한 날로부터 발생한다.

**제25조(징계의 해제 및 보고)**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단체 이사회는 징계의 해제 또는 경감을 할 수 있다.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장애인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부 칙(2015. 1. 19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0. 11. 19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2. 12. 1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(2026. 1. 23.)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